

대학안전관리계획(안)

2022. 2.

동서대학교

목 차

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1
1. 목표 및 기본방향	1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2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5
1. 재난	5
① 자연재난	5
② 사회재난	8
2. 안전사고	10
① 대학 안전사고	10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12
③ 연구실사고	14
3. 감염병 확산	16
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6
4. 범죄	18
① 일반범죄	18
② 성범죄	23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27
① 산업재해	27
② 중대재해	34
6. 기타	39
① 비상사태(전시, 침투·도발 등)	39

목 차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42
IV.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46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55
VI.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9
※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59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72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64

1.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학생활 구현

목표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추진과제

1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위험별 대응매뉴얼과 안전조치
- 위험별 피해현황과 예방 및 대응 조치 계획

2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대학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 연구실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3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법령에 규정된 안전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

4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현황

□ 일반현황

학교명	동서대학교		설립 구분	사립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동서대학교				
전화	051-313-2001~4	FAX	051-313-1046	홈페이지	https://www.dongseo.ac.kr/
총장	장제국	총괄안전관리 책임자(관)		공승무 (직책 :사무처장)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		합계	비고
		석사	박사		
	9,007	219	90	9,316	

교직원 (명)	교직원	전임교원	학생보호인력	기타	합계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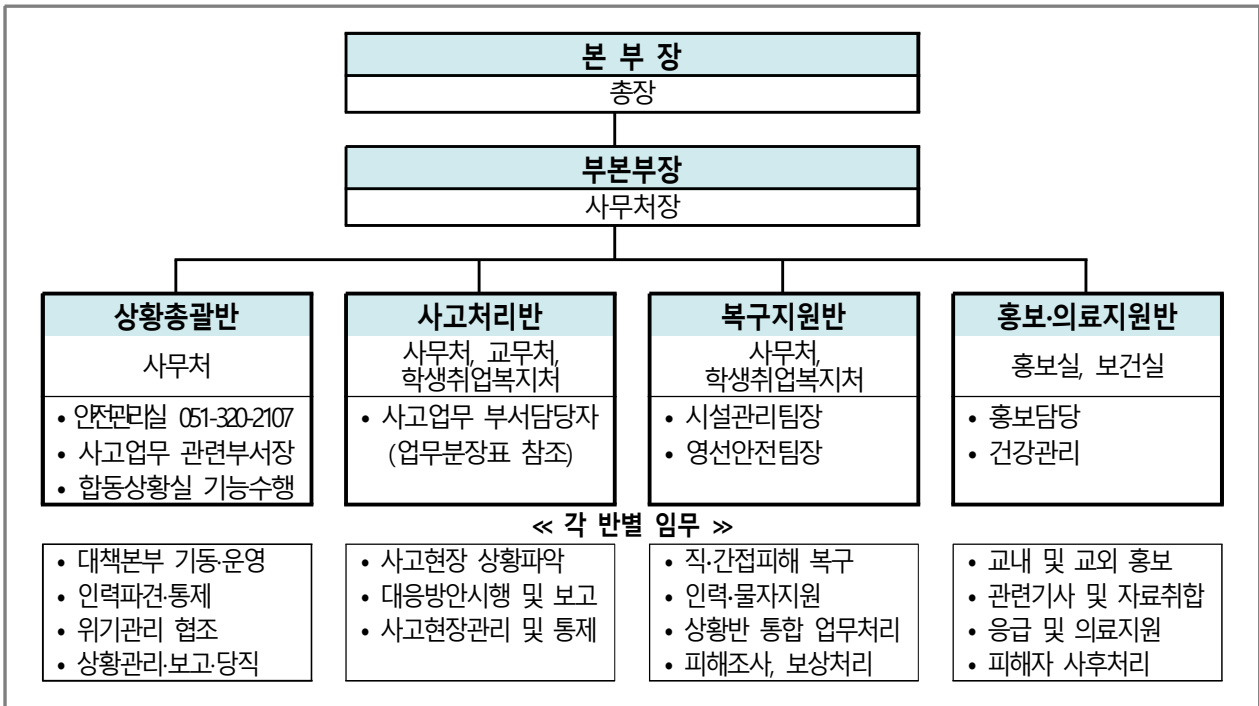
② 조직체계 현황

□ 담당부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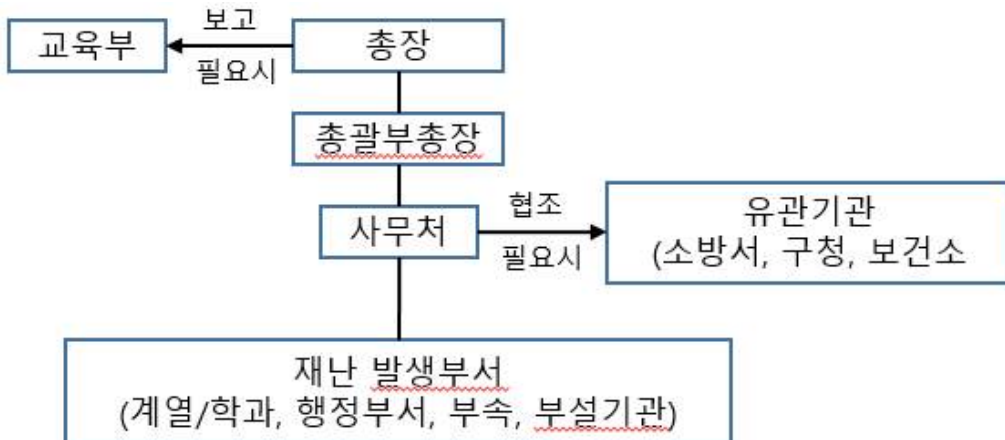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대학본부	사무처
1. 재난	자연재난	시설관리팀	영선안전팀
	사회재난	영선안전팀	시설관리팀
2. 안전 사고	대학안전사고	학생복지팀	영선안전팀
	연구실 사고	연구실안전팀	영선안전팀
	교육시설안전	안전관리실	영선안전팀
3. 감염병	코로나 19	학생생활관	학생복지팀
4. 범죄	성범죄	학생생활상담센터	교무팀, 총무팀
	일반범죄	학생복지팀	교무팀, 총무팀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영선안전팀	교무팀, 총무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실	영선안전팀
6. 기타	비상사태	예비군연대	사무처

□ 비상 연락망

부서명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총장실	총장	장제국	051-320-1500	
부총장실	부총장	김정선	051-320-2881	
교무처	처장	남호수	051-320-1716	
학생취업복지처	처장	송강영	051-320-1884	
예비군연대	연대장	차재관	051-320-1903	
예비군연대	참모	김찬곤	051-320-2959	
사무처	처장	공승무	051-320-2018	
안전관리실	실장	윤명수	051-320-2107	
총무팀	팀장	이상철	051-320-2051	
시설관리팀	팀장	오준호	051-320-2060	
영선안전팀	팀장	박상울	051-320-2166	
영선안전팀	담당	조성래	051-320-2059	
연구실안전팀	담당	윤영민	051-320-4282	
기자재관리팀	담당	이호석	051-320-2061	
교원인사팀	팀장	박현주	051-320-2052	
학생생활상담센터	담당	황주혜	051-320-2194	
학생생활상담센터	연구원	박미정	051-320-2194	
학생취업복지처	실장	백운용	051-320-2033	
학생취업복지처	담당	최성근	051-320-4813	
글로벌빌리지	팀장	안재곤	051-32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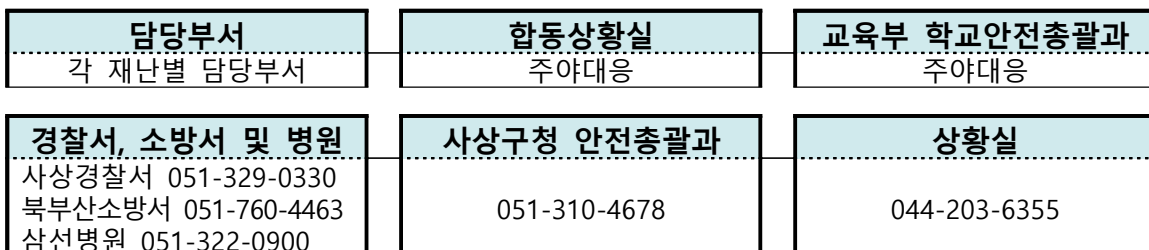
○ 대학 내·외부 재난 상황 전달 체계



○ 재난 심각단계 이전



○ 재난 심각단계



II 위험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1.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관리팀	팀장	오준호	051-320-2060, cnn386@gdsu.dongseo.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팀	팀장	이상철	051-320-2051, lsc001@dongseo.ac.kr	
팀장	영선관리팀	팀장	박상울	051-320-2166, plmh@gdsu.dongseo.ac.kr	협조부서
팀원	영선관리팀	담당	조성래	051-320-2059, jsr76@gdsu.dongseo.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 피해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수				2		0.4
재산피해(백만원)				20		4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계					

□ 원인분석

○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 국지성 집중호우 및 슈퍼태풍, 게릴라성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 시설물 피로도 증가

- 매년 거듭된 자연재해로 시설물의 피로도가 증가

- 시설물 피로도 누적으로 누수 등이 발생

○ 구성원의 주인 의식 부족 및 인력 한계

- 예고된 자연재해 발생 전 창문 시건 확인 등 예방조치 협조를 공지하나 제대로 조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사전 예방조치 대상은 많으나 인력이 한정되어 선제적 조치에 어려움이 많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시설물 사전 점검 및 선제적 예방 조치

- 동·하절기 사전 점검(건물 옥상, 배수로, 장비 고정 점검, 배관 점검)

- 재해 대비물자 점검(모래주머니, 염화칼슘, 제설장비 확인 등) ☞ 관리과 협조

- 비상사태 시 인력동원을 위한 사전 협의 ☞ 총무과 협조

- 소방전문업체를 월간(외관 점검) 및 정기(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각 연1회) 점검 실시

- 연1회 관할 소방서와 합동 소방 훈련 실시

- 법정 필수 교육으로 소방안전교육(온라인) 실시

○ (대응·조치) 체계적 보고를 통한 신속한 대응 실시

- 재해 발생 시 체계적 보고 및 신속한 공지 실시

- 경비 순찰자 순찰구역 및 횡수 확대(옹벽, 사면 등) 및 신속 대응 실시 ☞ 관리과 협조

- 예고된 자연재해 발생 시 당직근무 계획 및 배치

- 시설물 파손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설물 신속 복구

※ 관련 매뉴얼 :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 관련 매뉴얼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교육부,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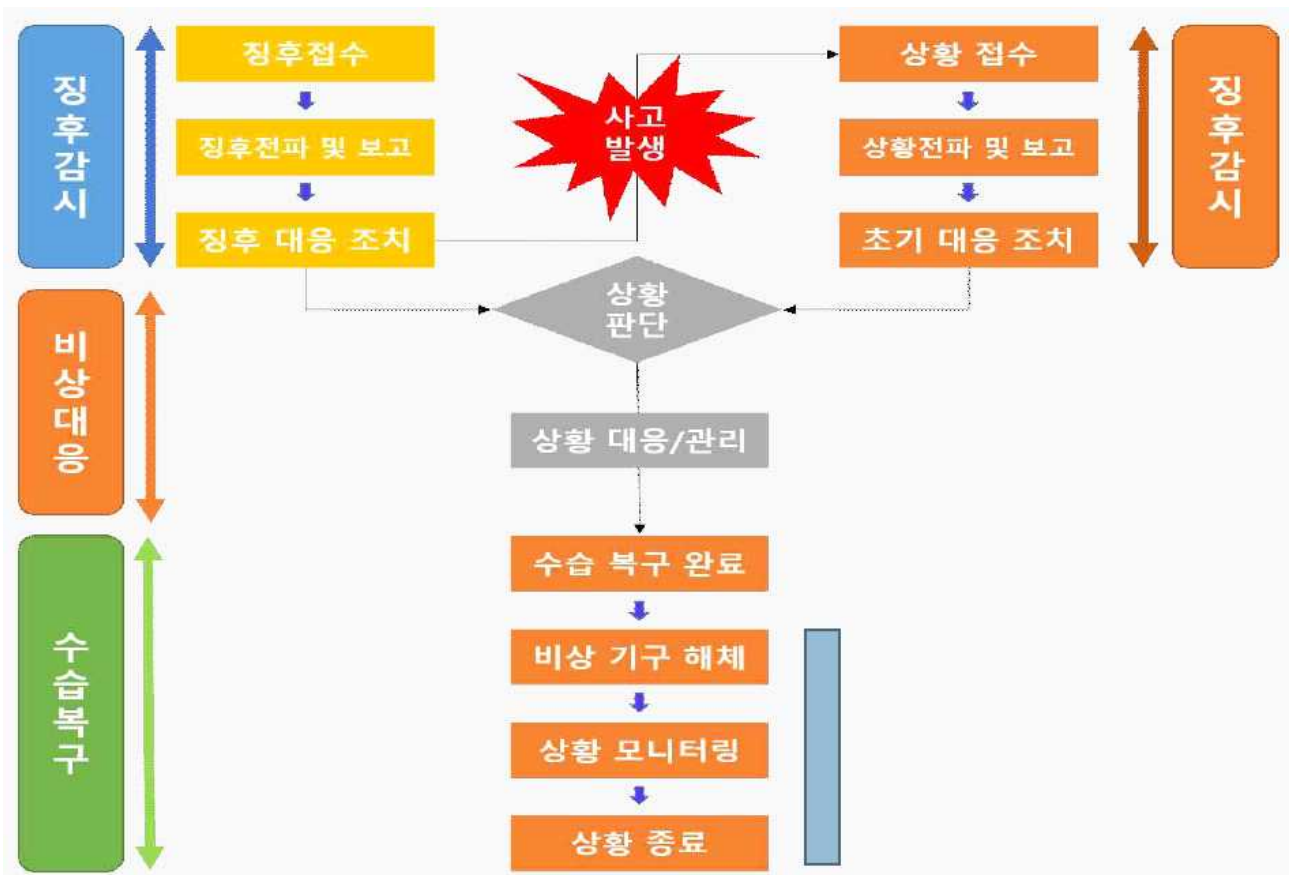
○ (수습·복구) 피해 상황 집계 및 시설물 복구

- 피해 상황 집계를 통한 피해액 누계 산출 및 복구 계획 수립(파손 원인 파악 등)

- 위험 구간 접근 금지를 위한 임시 조치 실시

-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파손은 신속한 복구 실시

□ 재난 대응 및 복구 체계절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소방설비관리용역	22	22	22	66	
대기배출시설자가측정	0	7	7	14	
계	22	29	29	80	

2 사회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영선안전팀	팀장	박상율	051-320-2166, plmh@gdsu.dongseo.ac.kr	주관부서
팀원	영선안전팀	팀원	조성래	051-320-2059, jsr76@gdsu.dongseo.ac.kr	
팀장	시설관리팀	팀장	오준호	051-320-2060, cnn386@gdsu.dongseo.ac.kr	협조부서
팀원	글로벌빌리지	팀장	안재곤	051-320-2024, ajg@gdsu.dongseo.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원인분석

최근 5년간 사례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캠퍼스 화재)

- 대학내 자위소방대 조직 활성화 및 조직별 임무 숙지
- 소방시설 점검 및 소방훈련(민관합동훈련) 년 1회 실시
- 기숙사 학생 대상으로 화재대피훈련 년 2회 실시(3월, 9월)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고위험 실습실 관리 계열/학과) 년 1회 실시

○ (건물붕괴)

- 자연재난대비 안전점검실시(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년 3회 실시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기계설비성능점검	0	0	10	10	
건물정밀안전진단		20	20	40	
계	0	20	30	50	

2. 안전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취업복지처	실장	백운용	051-320-2033, chanho@gdsu.dongseo.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취업복지처	담당	최성근	051-320-4813, choisunggun@gdsu.dongseo.ac.kr	
팀장	영선관리팀	팀장	박상울	051-320-2166, plmh@gdsu.dongseo.ac.kr	협조부서
팀원	영선관리팀	담당	조성래	051-320-2059, jsr76@gdsu.dongseo.ac.kr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애,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장애학생 안전, 학교폭력, 식중독

□ 피해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원인분석

- 조사 결과
 - 교육활동 생활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향상, 코로나-19로 인한 집단연수 감소, 비대면 교육활동 확대 등으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학생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활동)** 학교안전사고 유사사례, 통계 등의 검토·분석을 통한 사고유발 요인 사전예방·대응관리와 안전사고 유형별 신속한 보고체계 및 적절한 보상·회복 지원 기반 조성

※ 관련 매뉴얼 : 대학안전사고 관리지침(교육부, 2022 예정)

○ **(교외활동)** 대학에서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숙박시설 이행, 행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등 학생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 점검·교육

※ 관련 매뉴얼 :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2020)

※ 관련 매뉴얼 :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매뉴얼(교육부, 2021)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경영자배상책임보험	12	12	12	36	

2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실	실장	윤명수	051-320-2107, msyun@gdsu.dongseo.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관리팀	팀장	오준호	051-320-2060, cnn386@gdsu.dongseo.ac.kr	
팀장	영선관리팀	팀장	박상율	051-320-2166, plmh@gdsu.dongseo.ac.kr	협조부서
팀원	영선관리팀	담당	조성래	051-320-2059, jsr76@gdsu.dongseo.ac.kr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원인분석

○ 해당 사항 없음 (안전사고 발생 건수 :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관련 매뉴얼 : [별첨9] 교육시설안전 인증 자체평가서 작성요령(교육부, 2021)
교육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안전·유지관리 매뉴얼(교육부, 2022 예정)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관련 매뉴얼 : [별첨10]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교육부, 2021)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교육시설안전보험	25	25	25	75	

3 연구실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실	실장	윤명수	051-320-2107, msyun@gdsu.dongseo.ac.kr	주관부서
팀원	연구실안전팀	담당	윤영민	051-320-4252, dream81@gdsu.dongseo.ac.kr	
팀장	영선안전팀	팀장	박상율	051-320-2166, plmh@gdsu.dongseo.ac.kr	협조부서
팀원	기자재관리팀	담당	이호석	051-320-2061, chruger@gdsu.dongseo.ac.kr	

□ 위험요인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의 훼손 발생

※ [사고유형]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사고 유형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수	1					0.2
재산피해(백만원)	0.6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1				
	계	1				0.2

□ **원인분석**

○ **정밀안전점검 조사 결과**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활동 확대 등으로 연구실 안전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연구실 안전사고 유발요인 및 학생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관리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연구실 사고 유형 별 예방·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한 연구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등 직무별 대응·행동요령 숙지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연구실전담인력지원사업 사업		90	90	180	
연구실 안전 관리비	30	32	29	91	
계	30	122	119	271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혁신지원_용역/물품	55	41	40	136	
혁신지원_장비	90	8	10	108	
계	145	50	50	245	

4. 범죄

1] 일반범죄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취업복지처	실장	백운용	051-320-2033, chanho@gdsu.dongseo.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취업복지처	담당	최성근	051-320-4813, choisunggun@gdsu.dongseo.ac.kr	
팀장	총무팀	총무팀장	이상철	051-320-2051, lsc001@dongseo.ac.kr	협조부서
팀원	교원인사팀	팀장	박현주	051-320-2052, musepark@gdsu.dongseo.ac.krr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피해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 수	0	0	0	0	0	0
피해자 수	0	0	0	0	0	0

□ 원인분석

- 교내 폭행 행위, 외부인 침입 사례 등의 일반범죄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피해자 수는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예방기법의 도입과 방법시설의 확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예방)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설계*를 시행하고, 순찰·신고 및 보고 체계 구축, 폭행사건 발생 시 초동 대처요령 및 행동 매뉴얼 수립·교육 등의 사전대책방안 마련

*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의 활성화 등 CEPTED 기법 적용

- (대응조치) 범죄피해자·목격자의 신고·비상벨 작동 시 학생지원센터, 통합보안실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조치 및 유관 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신고
- (회복지원)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존엄성 보장과 명예·사생활 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 관련 매뉴얼 : [별첨13]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 [범죄공통] 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교내 범죄

- 대학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

- 대학생들과 대학행정을 위한 교육시설의 개방 및 접근통제 관리
- 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 활동
- 신변위협에 대한 행동요령 마련 및 홍보
- 음주, 흡연, 마약류 사용 등에 관한 규제와 교육 프로그램
- 사고 현장에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발생 신고 접수·대응
- 범죄 발생 시 자체적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
- 범죄 사건 발생 데이터 수집·관리

-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설계(CEPTED) 기법 적용

- **(자연적 감시)**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
- **(접근통제)**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 '접근통제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
- **(영역성 확보)**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 **(활동의 활성화)**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증거 기록

- 학생(또는 교직원)이 다른 학생(또는 교직원)에게 해를 주었다고 신고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들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
- 목격자(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 제공
- 물리적 또는 문서상의 증거를 보존·기록
- 목격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이들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이들 증언의 온전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참조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심각 (빨간색)

※ [별첨13]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비전	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		
목표	“원상회복”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연속적 지원서비스 제공	“실질적 참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강화와 참여기회 확대	“평온하고 안전한 삶으로 복귀” 신변 및 정보보호를 통한 2차피해와 재피해 예방
추진 정책	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	-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가해자의 책임인식 및 피해배상 촉진	-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형사절차 참여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 법률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출권 강화	
	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 예방	-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	-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 정책기반 강화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인권의식함양 프로그램	2.5	1.75	1.5	5.75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활용
교직원 교육훈련	4.5	4.5	4.5	13.5	
계	2.5	1.75	1.5	5.75	

2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생활 상담센터	부주사	황주혜	051-320-2194, hjh@dongseo.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생활 상담센터	연구원	박미정	051-320-2194, mjpark2194@dongseo.ac.kr	
팀장	학생취업복 지처	실장	백운용	051-320-2033, chanho@gdsu.dongseo.ac.kr	협조부서
팀장	총무팀	총무팀장	이상철	051-320-2051, lsc001@dongseo.ac.kr	
팀원	교원인사팀	팀장	박현주	051-320-2052, musepark@gdsu.dongseo.ac.krr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

□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 수	성희롱	3	3	3	0	0	1.8
	성폭력	0	1	1	0	0	0.4
	계	3	4	4	0	0	2.2
피해자 수	성희롱	3	3	8	0	0	2.8
	성폭력	0	1	5	0	0	1.2
	계	3	4	13	0	0	4

□ **원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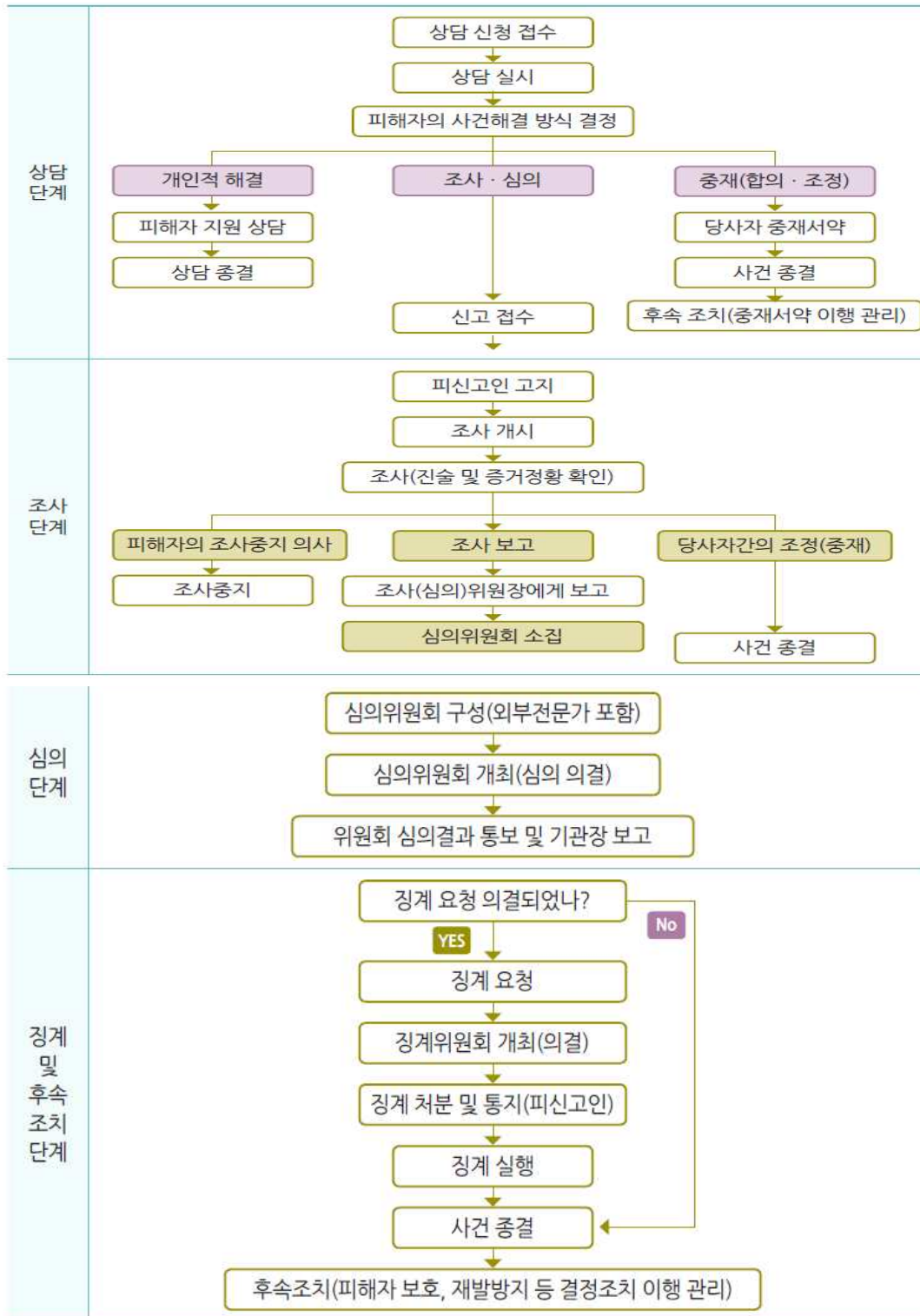
- 성폭력 발생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성희롱 행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학교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과 상담·신고 등 고충처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성희롱 행위) 성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대응 체계 구축·운영
-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점검 창구 마련을 통한 범죄 사전예방과 상담-조사-심의-조치 등 전(全) 단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기반 조성

※ 관련 매뉴얼 : [별첨14]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여성가족부, 2022)
 [별첨15]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교육부, 2020)

□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인권의식함양 프로그램	2.5	1.75	1.5	5.75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활용
교직원 교육훈련	4.5	4.5	4.5	13.5	
계	2.5	1.75	1.5	5.75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예시 서식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영선안전팀	팀장	박상율	051-320-2166, plmh@gdsu.dongseo.ac.kr	주관부서
팀원	영선안전팀	팀원	조성래	051-320-2059, jsr76@gdsu.dongseo.ac.kr	
팀장	총무팀	팀장	이상철	051-320-2051, lsc001@dongseo.ac.kr	협조부서
팀원	교원인사팀	팀장	박현주	051-320-2052, musepark@gdsu.dongseo.ac.krr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피해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수	0	0	1	1	3	1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1	1	3
	계	0	0	1	1	3

□ 원인분석

-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 및 불안정한 안전의식에 의한 재해발생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조치)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 및 불안정한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주 안전교육 실시, 작업중 관리감독자 현장참석, 작업장 불안정한 상태 제거
- (보건조치) 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1차 조치(교내 보건소) 후 병원 이송, 노동청에 산업재해발생보고,

※ 관련 매뉴얼 : [별첨16]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2022)

《 산업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21년도 산업재해 통계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관별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추진
- '22년도에는 구성된 체계에서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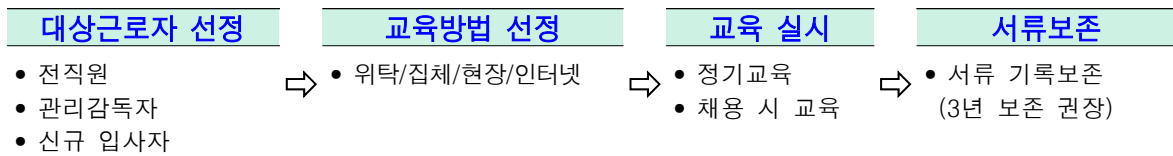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업무 수행

※ (의무대상)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경비 및 통학보조, 조리시설 등 현업업무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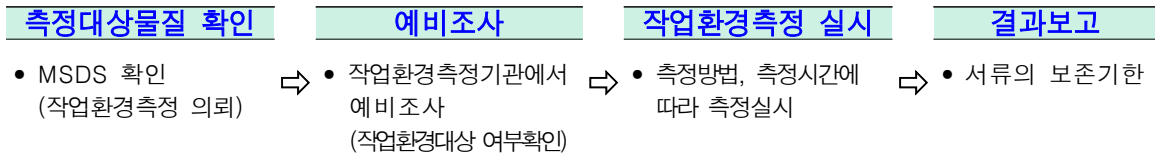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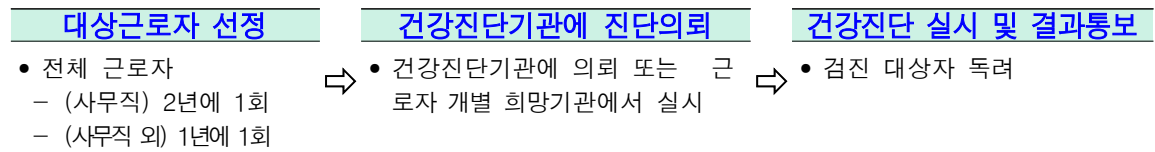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수준을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직업병 발생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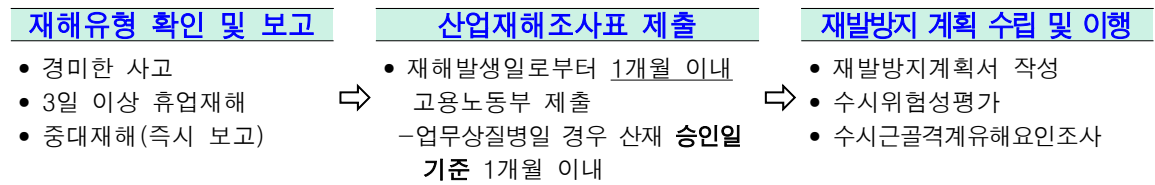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를 통해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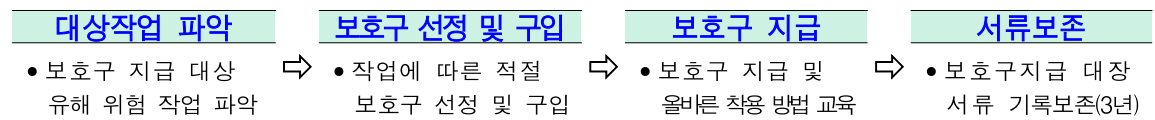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국립대학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방향 설정
- 교육부의 산업재해 통계 보고 양식에 따라, 교육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 유해·위험 방지 활동

- 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 시 실시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해 조사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시 실시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참조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

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

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관련 매뉴얼 : [별첨16]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2022)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이행계획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사업주 :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처벌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처벌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의무 이행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관리 8. 안전시설 및 보호구 구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조직별 주요업무 참조

주체	주요 업무		
사업주 (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총장, 특수학교장, 소속기관장)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총괄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안전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현업근로자 50~1,000명 : 1명, 1,000명 이상 : 2명 이상) 	보건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현업근로자 50~5,000명 : 1명, 5,000명 이상 : 2명 이상)
관리감독자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등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산업보건의 (현업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등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현업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중대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산재보험가입 (교원, 직원)	2	2	2	6	
산재보험가입 (학생)			15	15	
계	2	2	17	21	

2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실	실장	윤명수	051-320-2107, msyun@gdsu.dongseo.ac.kr	주관부서
팀원	연구실안전팀	담당	윤영민	051-320-4252, dream81@gdsu.dongseo.ac.kr	
팀장	영선관리팀	팀장	박상율	051-320-2166, plmh@gdsu.dongseo.ac.kr	협조부서
팀원	영선관리팀	담당	조성래	051-320-2059, jsr76@gdsu.dongseo.ac.kr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 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험

□ 피해현황

예시 서식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원인분석

- 해당 사항 없음 (안전사고 발생 건수 : 0)
 - 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으로 본교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없으나, 최근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관리는 필요함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체계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으로 학교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자율적으로 유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안전체계 구축
- (환경조성)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재해발생 시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 관련 매뉴얼 : [별첨17] 2022년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교육부, 2022)

중대재해 관리체계 및 이행계획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처벌대상	경영책임자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그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교육기관 제외
의무 이행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1.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총괄 관리 전담 조직 설치 ※ 컨트롤타워 역할: 총괄관리의 의미로 안전·보건업무 직접수행의 의미는 아님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 4.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 예산편성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전문인력 배치(안전·보건관리자 등)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9. 제3자의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보고 2. 인력, 예산 지원 3.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확인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체계



○ 역할과 책임

구분	주요 역할
경영책임자 (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대표 및 총괄
안전보건총괄 관리책임관 (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의 철저 이행, 사전·사후 지원 및 지도 등 관련업무 전반을 총괄·지도 ① 소속기관과 국립특수학교의 안전관리체계 구성 이행 여부 점검 확인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지원 ③ 직종별 사업장별 위해요인 확인 개선 방법 지도 및 지원 ④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추진계획 수립·운영 ⑤ 도급·용역 위탁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등 * 소속기관, 국립특수학교 현장에 재해예방 안착 전까지 안전보건 이행 상황 수시 점검(현장방문 및 서면 포함 월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부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추진계획 수립·운영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준수
관리감독자 (사무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지도 •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등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지도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지도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0	0	0	0	0
	0	0	0	0	0

6. 기타

1 비상사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5 등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제13조의5 등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2. 7. 5. 시행 예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예비군연대	연대장	차재관	051-320-1903, jaegwan1101@naver.com	주관부서
팀원	예비군연대	참모	김찬곤	051-320-2959, rjsdl7391@gdsu.dongseo.ac.kr	
팀장	사무처	처장	공승무	051-320-2018, g0366@dongseo.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팀	총무팀장	이상철	051-320-2051, lsc001@dongseo.ac.kr	

□ 위험요인

- (비상사태) 전시·사변(국가적 난리·변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가·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긴급 상황
 - 공습·포격, 핵·방사능 피폭, 생물·화학무기 피해 등 적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 파손 및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 피해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원인분석**

○ 자체조사 결과 : 최근 5년 이내 관련 피해현황 없음.

- 전시, 사변, 폭동 등 국가차원의 비상사태는 발생된 사례가 없으나, 관련 법령 및 충무계획 등에 따른 평시·전시 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실시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계획수립)**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조치, 인명·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충무실시계획 등 수립

- 매년 충무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승인 완료.
 - * 2022년도 동서대학교 충무실시계획(예비군연대-0025 / '22.10.25.) 교육부 승인 완료
- 민방공 대피계획 수립 시행(지자체 협조)
 - * 민방공 대피계획은 지자체와 협조하여 학교 자체시행 중.
 - * 민방위 상황별(지진, 태풍, 화생방, 건물화재 등) 행동절차 매뉴얼 작성 활용 중
 - * 기타 응급조치(방독면 착용, 소화기 사용요령, 심폐소생술 등), 민방공훈련시 행동요령 등
- 학교 내 대피소 지정 운영
 - * 학교 내 대피시설 9개소 지정하여 운영 중.
- 비상대비물자 준비현황
 - * 민방위 관련 물자 현황 : 방독면(화재용) 등 18개 품목 78개 확보 중.
 - * 물자 사용요령은 학교 민방위 대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함.

○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 합동상황실 운용계획 수립 시행 중.
 - * 동서대학교 충무실시계획(2022년도) “부침 11” 합동상황실 운용계획 참조

○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비상대비 교육과 재난대비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민방위 물자 확보계획	0.5	0.5	0.5	1.5	
계	0.5	0.5	0.5	1.5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예시 서식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대학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연구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민법 & 학교안전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	대학종합 보험(공제)	2021-03-14 2022-02-28	2.6	10,000	20,513	4	1,778	-	-	
2020	대학종합 보험(공제)	2020-03-14 2021-03-13	2.7	10,000	24,284	5	1,394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배상책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담보 등)	대인	100,000	3,0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	2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교내·외 (교내·외 치료비 담보 등)	치료비	2,000	2,000	자기부담금 10만원
	사망, 후유장해	200,000	200,000	
신입생(OT)등 (신입생 학교행사 중 담보 등)	치료비	2,000	2,000	자기부담금 10만원
	사망, 후유장해	200,000	200,000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대학종합 보험(공제)	2020-03-01 2021-02-28		206.898	24,963			1	18,082	재난복구비 신청
2021	대학종합 보험(공제)	2021-03-01 2022-02-28		206.898	24,963	-	-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유족급여	200,000	2,000,000	
장해급여	200,000	200,000	
치료비	10,000	1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입원급여	10,000	10,000	
수업료 손실 지원금	한도	1,000	정규학기 미수료, 손실액 발생 시 또는 15일 이상 연속 입원 시
기숙사비 손실 지원금	한도	300	잔여학기 사용불능, 손실액 발생 시 또는 15일 이상 연속 입원 시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	연구실안 전공제	2020-06-20 2021-06-19	1.5	4,177	6,569					
2022	연구실안 전공제	2021-06-20 2022-06-19	1.1	3,960	4,374		-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유족급여	200,000		자기 부담금 없음
장해급여	200,000		
요양급여	50,000		
장의비	10,000		
입원급여	50		3일 초과 연속 입원 시
수업료 손실 지원금	100만원 한도 내		정규학기 미수료에 따른 손실액 발생 시 또는 15일 이상 연속 입원 시
기숙사비 손실 지원금	30만원 한도 내		잔여학기 사용불능에 따른 손실액 발생 시 또는 15일 이상 연속 입원 시''''''

1. 재난안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영선관리팀	팀장	박상율	051-320-2166, plmh@gdsu.dongseo.ac.kr	주관부서
팀원	영선관리팀	담당	조성래	051-320-2059, jsr76@gdsu.dongseo.ac.kr	
팀장	안전관리실	실장	윤명수	051-320-2107, msyun@gdsu.dongseo.ac.kr	협조부서
팀원	연구실안전팀	담당	윤영민	051-320-4252, dream81@gdsu.dongseo.ac.kr	

□ 2021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온라인)	2021.3.30.~4.5	18:00-20:00	217명	
교직원	2021.6.15.	14:00~15:00	12명	
학생(온라인)	2021.10.19.~10.27	18:00-20:00	333명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소방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소화기, 옥내소화전, 소화설비 작동방법 및 실습 ▪ 야간화재시 대피요령 및 구조활동의 중요성 교육 ▪ 전기화재의 위험성 및 화재시 대체요령 교육

□ 2022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022.3	미정	미정	
교직원	2022.3	미정	미정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소방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소화기, 옥내소화전, 소화설비 작동방법 및 실습 ▪ 야간화재시 대피요령 및 구조활동의 중요성 교육 ▪ 전기화재의 위험성 및 화재시 대체요령 교육

2.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영선관리팀	팀장	박상울	051-320-2166, plmh@gdsu.dongseo.ac.kr	주관부서
팀원	영선관리팀	담당	조성래	051-320-2059, jsr76@gdsu.dongseo.ac.kr	
팀장	안전관리실	실장	윤명수	051-320-2107, msyun@gdsu.dongseo.ac.kr	협조부서
팀원	연구실안전 팀	담당	윤영민	051-320-4252, dream81@gdsu.dongseo.ac.kr	

□ 2021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행사진행 시	1	행사 참가 인원	
교직원	매월 1회	09:00~10:00	8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내·외 학생활동 및 행사 시	▪ 참여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주관부서 관리책임자 진행)
안전교육	▪ 불안정한 행동과 불안정한 상태의 개선방안 교육 및 점검

□ 2022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행사진행 시	1	행사 참가 인원	
교직원	매월 1회	09:00~10:00	8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내·외 학생활동 및 행사 시	▪ 참여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주관부서 관리책임자 진행)
안전교육	▪ 불안정한 행동과 불안정한 상태의 개선방안 교육 및 점검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영선관리팀	팀장	박상울	051-320-2166, plmh@gdsu.dongseo.ac.kr	주관부서
팀원	영선관리팀	담당	조성래	051-320-2059, jsr76@gdsu.dongseo.ac.kr	
팀장	안전관리실	실장	윤명수	051-320-2107, msyun@gdsu.dongseo.ac.kr	협조부서
팀원	연구실안전팀	담당	윤영민	051-320-4252, dream81@gdsu.dongseo.ac.kr	

□ 2021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행사진행 시	1	행사 참가 인원	
교직원	월1회	13:00~14:00	52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 위생설비(화장실 등) 관리기준 및 관리 방법 교육

□ 2022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행사진행 시	1	행사 참가 인원	
교직원	월1회	13:00~14:00	52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 위생설비(화장실 등) 관리기준 및 관리 방법 교육

4. 연구실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실	실장	윤명수	051-320-2107, msyun@gdsu.dongseo.ac.kr	주관부서
팀원	연구실안전팀	담당	윤영민	051-320-4252, dream81@gdsu.dongseo.ac.kr	
팀원	기자재관리팀	담당	이호석	051-320-2061, chruger@gdsu.dongseo.ac.kr	협조부서

□ 2021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온라인신규교육훈련	신규 교육	2회/년중	1,188명	
정기교육훈련	정기 교육	2회/년	80명	
오프라인교육훈련	특별안전교육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연구실 안전교육	-실험 전·후 안전 -연구실책임자 교육 -연구실 안전관리 기본 -연구실 사고 사례 및 대응 등

□ 2022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온라인 교육	신규 교육	2회/년	약 1,500명	1,000,000원
온라인 교육	정기 교육	2회/년	약 1,500명	
오프라인교육훈련	특별안전교육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연구실 안전교육	-실험 전·후 안전 -연구실책임자 교육 -연구실 안전관리 기본 -연구실 사고 사례 및 대응 등

5. 감염병 예방교육

감염병 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보건실	실장	김연자	051-320-2872, yakop1052@gdsu.dongseo.ac.kr	주관부서
팀원	글로벌빌리지	팀장	안재곤	051-320-2024, ajg@gdsu.dongseo.ac.kr	
팀장	학생취업복지처	실장	백운용	051-320-2033, chanho@gdsu.dongseo.ac.kr	협조부서
팀원	학생취업복지처	담당	최성근	051-320-4813, choisunggun@gdsu.dongseo.ac.kr	

2021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코로나19 예방	코로나19 게시판 게시 및 그룹메일 발송	10건	구성원 전체	
코로나 방역 대책 및 수칙 등		73건		
비대면 유선 교육	전화 상담 등	1,000건 이상	1,000건 이상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감염병 예방교육	▪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수칙, 관리 지침 등

2022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미정	미정	미정	
감염병 진료 및 보호	미정	미정	미정	
감염병 예방 수칙	미정	미정	미정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감염병 예방교육	▪ 감염병 예방교육

5. 성범죄 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 등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생활 상담센터	담당	황주혜	051-320-2194, hjh@dongseo.ac.kr	주관부서
팀원		연구원	박미정	051-320-2194, mjpark2194@dongseo.ac.kr	
팀장	학생취업복 지처	실장	백운용	051-320-2033, chanho@gdsu.dongseo.ac.kr	협조부서
팀장	총무팀	총무팀장	이상철	051-320-2051, lsc001@dongseo.ac.kr	
팀원	교원인사팀	팀장	박현주	051-320-2052, musepark@gdsu.dongseo.ac.krr	

2021년 교육·훈련 결과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021.09.13.~12.21.	2시간	7,125명	자체시스템
	2021.01.06.~12.20.	1시간(7회)	212명	1,750,000
교직원	2021.09.29.~11.30	4시간	934명	4,500,0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학생 폭력예방교육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 2022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학생	폭력예방교육(온라인)	1회	8,000명	자체시스템
	양성평등인식증진교육	6회	180명	1,500,000
교직원	폭력예방교육(온라인)	1회	1,000명	4,500,0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학생 폭력예방교육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6. 비상대비 교육·훈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예비군연대	연대장	차재관	051-320-1903, jaegwan1101@naver.com	주관부서
팀원	예비군연대	참모	김찬곤	051-320-2959, rjsdl7391@gdsu.dongseo.ac.kr	
팀장	사무처	처장	공승무	051-320-2018, g0366@dongseo.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팀	팀장	이상철	051-320-2051, lsc001@dongseo.ac.kr	

2021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	2021.05	1시간	70명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직원	▪ 지진 및 풍수해 대비훈련

2022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교직원	지진 및 풍수해 대비훈련	1회	70명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직원	▪ 지진 및 풍수해 대비훈련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재난전문가(교수, 박사 등),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대학 학교안전 관련 주요정책, 유관기관 협업과제 발굴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년 2회 이상)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재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사상경찰서	051-329-0330	-	
주례지구대	051-326-8671	-	
북부산소방서	051-760-4463	-	
삼선병원	051-322-0900	-	
사상구청 안전총괄과	051-310-4678	-	
사상구 보건소	051-310-4791	-	
한국전기안전공사	051-960-5200	-	기술진단부
한국전력공사 북부산지사	051-309-2352	-	고객지원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051-711-7147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5	-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사무처	051-320-2059		사무처

안전사고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사상경찰서	051-329-0330	-	112종합상황실
주례지구대	051-326-8671	-	
북부산소방서	051-760-4463	-	
삼선병원	051-322-0900	-	
사상구청 안전총괄과	051-310-4678	-	
사상구 보건소	051-310-4791	-	
한국전기안전공사	051-960-5200	-	
한국전력공사 북부산지사	051-309-2352	-	고객지원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051-711-7147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5	-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동서대학교 사무처	051-320-2059		사무처

□ 감염병 확산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질병관리본부	지역번호+120·1339		
사상구보건소	051-320-4872		
교육부 보고	0404-203-7146	moe04@korea.kr	
지역 보건소	051-310-4791	-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학생취업복지처	051-320-2033		

□ 범죄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사상경찰서	051-329-0330	-	112종합상황실
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1-207-1295		일반범죄
부산스마일센터	051-582-1295		성범죄
해바라기센터	051-244-1375		성범죄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학생취업복지처	051-320-2033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부산 소방재난본부	051-760-3006		
북부산소방서	051-760-4463		
한국전기안전공사	051-960-5260		
한국가스안전공사	051-640-0825		
한국전력공사 북부산지사	051-309-2352		
삼선병원	051-322-0900		
사상구보건소	051-320-4872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동서대학교 사무처	051-320-2059		

□ 비상사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예시 서식 ☞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국방부	02-748-5247		예비전력과
군부대	051-317-0113		53사단125여단 5대대
지자체	051-310-4132		도시안전과 민방위계
교육부	044-203-6118		

2) 상황실 운영 시

예시 서식 ☞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예비군연대	051-320-2112		

VI.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재난	① 자연재난	팀장	시설관리팀	팀장	오준호 cnn386@gdsu.dongseo.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팀	팀장	이상철 lsc001@dongseo.ac.kr	
		팀장	영선관리팀	팀장	박상율 plmh@gdsu.dongseo.ac.kr	협조부서
		팀원	영선관리팀	담당	조성래 jsr76@gdsu.dongseo.ac.kr	
	② 사회재난	팀장	영선안전팀	팀장	박상율 plmh@gdsu.dongseo.ac.kr	주관부서
		팀원	영선안전팀	팀원	조성래 jsr76@gdsu.dongseo.ac.kr	
		팀장	시설관리팀	팀장	오준호 cnn386@gdsu.dongseo.ac.kr	협조부서
		팀원	글로벌빌리지	팀장	안재곤 ajg@gdsu.dongseo.ac.kr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팀장	학생취업복지처	실장	백운용 chanho@gdsu.dongseo.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취업복지처	담당	최성근 choisunggun@gdsu.dongseo.ac.kr	
		팀장	영선관리팀	팀장	박상율 plmh@gdsu.dongseo.ac.kr	협조부서
		팀원	영선관리팀	담당	조성래 jsr76@gdsu.dongseo.ac.kr	
	② 교육시설안전사고	팀장	안전관리실	실장	윤명수 msyun@gdsu.dongseo.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관리팀	팀장	오준호 cnn386@gdsu.dongseo.ac.kr	
		팀장	영선관리팀	팀장	박상율 plmh@gdsu.dongseo.ac.kr	협조부서
		팀원	영선관리팀	담당	조성래 jsr76@gdsu.dongseo.ac.kr	
	③ 연구실사고	팀장	안전관리실	실장	윤명수 msyun@gdsu.dongseo.ac.kr	주관부서
		팀원	연구실안전팀	담당	윤영민 dream81@gdsu.dongseo.ac.kr	
		팀장	영선안전팀	팀장	박상율 plmh@gdsu.dongseo.ac.kr	협조부서
		팀원	기자재관리팀	담당	이호석 chruger@gdsu.dongseo.ac.kr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팀장	보건실	실장	김연자	051-320-2872, yakop1052@gdsu.dongseo.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생활관	팀장	안재곤	051-320-2024, ajg@gdsu.dongseo.ac.kr	
		팀장	학생취업복지처	실장	백운용	051-320-2033, chanho@gdsu.dongseo.ac.kr	협조부서
		팀원	학생취업복지처	담당	최성근	051-320-4813, choisunggun@gdsu.dongseo.ac.kr	
4. 범죄	① 일반범죄	팀장	학생취업복지처	실장	백운용	051-320-2033, chanho@gdsu.dongseo.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취업복지처	담당	최성근	051-320-4813, choisunggun@gdsu.dongseo.ac.kr	
		팀장	총무팀	팀장	이상철	051-320-2051, lsc001@dongseo.ac.kr	협조부서
		팀원	교원인사팀	팀장	박현주	051-320-2052, musepark@gdsu.dongseo.ac.krr	
	② 성범죄	팀장	학생생활상담센터	담당	황주혜	051-320-2194, hjh@dongseo.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생활상담센터	연구원	박미정	051-320-2194, mjpark2194@dongseo.ac.kr	
		팀장	학생취업복지처	실장	백운용	051-320-2033, chanho@gdsu.dongseo.ac.kr	협조부서
		팀장	총무팀	팀장	이상철	051-320-2051, lsc001@dongseo.ac.kr	
		팀원	교원인사팀	팀장	박현주	051-320-2052, musepark@gdsu.dongseo.ac.krr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팀장	영선안전팀	팀장	박상율	051-320-2166, plmh@gdsu.dongseo.ac.kr	주관부서
		팀원	영선안전팀	팀원	조성래	051-320-2059, jsr76@gdsu.dongseo.ac.kr	
		팀장	총무팀	팀장	이상철	051-320-2051, lsc001@dongseo.ac.kr	협조부서
		팀원	교원인사팀	팀장	박현주	051-320-2052, musepark@gdsu.dongseo.ac.krr	
	② 중대재해	팀장	안전관리실	실장	윤명수	051-320-2107, msyun@gdsu.dongseo.ac.kr	주관부서
		팀원	연구실안전팀	담당	윤영민	051-320-4252, dream81@gdsu.dongseo.ac.kr	
		팀장	영선관리팀	팀장	박상율	051-320-2166, plmh@gdsu.dongseo.ac.kr	협조부서
		팀원	영선관리팀	담당	조성래	051-320-2059, jsr76@gdsu.dongseo.ac.kr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6. 기타	① 비상사태	팀장	예비군연대	연대장	차재관 jaegwan1101@naver.com	주관부서
		팀원	예비군연대	참모	김찬곤 rjsdl7391@gdsu.dongseo.ac.kr	
		팀장	사무처	처장	공승무 g0366@dongseo.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팀	팀장	이상철 lsc001@dongseo.ac.kr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1. 재난	① 자연재난	발생건수				2		0.4	
		재산피해(백만원)				20		4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계						
	② 사회재난	발생건수				0			
		재산피해(백만원)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계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발생건수				0			
		재산피해(백만원)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계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건수				0			
		재산피해(백만원)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계						
	③ 연구실 사고	발생건수	1					0.2	
		재산피해(백만원)	0.6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1					
			계	1					0.2
3. 감염병확산	① 코로나-19	감염자 수				9	40	9.8	
		인명피해(사망)							
4. 범죄	① 일반범죄	발생건 수				0			
		피해자 수							
	② 성범죄	발생건 수	3	4	4	0	0	2.2	
		피해자 수	3	4	13	0	0	4	

위험유형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발생건수	0	0	1	1	3	1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1	1	3	1
			계	0	0	1	1	3	1
	② 중대재해	발생건수				0			
		재산피해(백만원)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계						
6. 기타	① 비상사태	발생건수				0			
		재산피해(백만원)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계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위험유형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0	2021	2022	합계		
1. 재난	① 자연재난	소방설비관리용역	22	22	22	22	
		대기배출시설자가측정	0	7	7	0	
		계	22	29	29	22	
	② 사회재난	기계설비성능점검	0	0	10	0	
건물정밀안전진단			20	20	0		
	계	22	29	29	22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경영자배상책임보험	12	12	12	36	
		계	12	12	12	36	
	② 교육시설안전사고	교육시설안전보험	25	25	25	75	
		계	25	25	25	75	
	③ 연구실안전사고	연구실전담인력지원사업사업		90	90	0	
		연구실 안전 관리비	30	32	29	30	
계		235	58	60	353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혁신지원_용역/물품	55	41	40	136	
		혁신지원_장비	90	8	10	108	
		계	145	50	50	245	
4. 범죄	① 일반범죄						
	② 성범죄	인권의식함양 프로그램	2.5	1.75	1.5	2.5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활용
		교직원 교육훈련	4.5	4.5	4.5	4.5	
계	22	29	29	22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산재보험가입 (교원, 직원)	2	2	2	6	
		산재보험가입 (학생)			15	0	
		계	22	29	29	22	
	② 중대재해						
6. 기타	① 비상사태	민방위 물자 확보계획	0.5	0.5	0.5	1.5	
		계	0.5	0.5	0.5	1.5	